

2021 [경기]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FAQ

1. 지원자격 관련

Q. 작은도서관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니까? 공고문 내 지원자격에 작성되어있는 문화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작은도서관 진흥법 혹은 도서관법 상 설립된 도서관이라면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에 명시되어 있는 곳이라면 지원신청이 가능하오니, 해당 총람을 확인바랍니다.

Q.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 내에서 미술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체 공간을 보유한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도 지원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본 공모사업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문화시설 관련 법령에서 정의한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민간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문화시설 관련 법령에 의거한 문화시설 혹은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시설과 컨소시엄을 맺는 경우에는 사업참여가 가능하나, 주 지원신청자 및 주 사업자는 민간단체가 아닌 문화시설이어야 합니다.

Q. 저희 재단은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에 모두 지원신청하고 싶습니다. 중복지원신청이 가능하니까?

A. 경기청소년 예술교육 장르특화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등 기초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교육팀의 공모사업 모두 중복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신청한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되었을 경우, 중복선정 및 운영 가능합니다.

2. 운영기준 관련

Q. 사업 운영기준에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반기든, 하반기든 저희 기관이 원하는 대로 기간을 잡고, 운영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문화시설에서 원하는대로 기간을 잡고 운영해주시면 됩니다.
단, 2021년 12월부터 사업 실적보고 및 최종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월인 11월 30일까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Q. 프로그램 운영전 연구개발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A. 지원신청한 프로그램을 디벨롭시킨다든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해야될 경우 연구개발진으로 참여하는 기획자, 강사, 보조강사의 인건비를 최대 3회까지 편성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1회 당 인건비는 문화시설의 자체기준에 따라 책정 가능하며, 해당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는 '2021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내 연구개발 인건비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사업 운영기준 '운영회차'에 적혀있는 시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A. 수업 진행 시간을 세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의 1시수는 대개 40분을 의미합니다.
유아들과 40분 수업(1시수)을 하고, 20분 쉬는 시간 후 40분 수업(1시수)을 하게 된다면 이는 총 2시수의 수업을 1회 진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회 수업 당 최대 3시수까지 구성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총 8시수 이상 구성하셔야 됩니다.
만약 1회 수업을 2시수로 구성한다면, 총 4회차 이상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하며,
또는 1회 수업을 3시수로 구성한다면, 총 3회차 이상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Q. 사업 운영기준 '참여모집'을 보면 유아기관을 모집·관리하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미술관에서 직접 유아기관을 모집해야 하는 것인지 경기센터에서 매칭해주는 것인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 A. 본 공모사업은 참여 유아기관을 경기센터에서 매칭해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업에 선정되신 문화시설에서 직접 홍보, 모집, 관리 등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Q. 저희 지역은 유아기관이 매우 적은 지역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유아기관이 소극적으로 행동하게된다면, 저희가 8~10개소까지 모집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모집가능한 유아기관의 수를 자체적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바탕으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우선적으로 유아기관 8~10개소를 기준으로 계획 및 작성 바랍니다.
선정 이후 본격 조사를 통해 참여 유아기관 모집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기센터와 협의 바랍니다.

Q. 사업 운영기준 '교육공간'을 보면 문화시설 공간에서의 수업을 1회 이상 필수로 구성하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코로나19가 심각해져 유아기관의 유아들이 외부활동이 불가할 경우, 구성한대로 문화시설 공간에서의 수업을 반드시 강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참여 유아기관과의 협의내용에 따라, 문화시설 공간에서의 수업을 유아기관 공간에서의 수업으로 전환하여 진행 가능하며, 대면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해질 경우 비대면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따라, 해당 문화시설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운영대안 및 계획을 지원신청서 상에 작성 바랍니다.

3. 의무사항 관련

Q. 의무사항 중 선정후 무단으로 프로그램 내용 70% 이상 변경 불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A. 선정 이후 문화시설 자체 연구개발, 자체 전문가 자문, 경기센터 주관 컨설팅 등의 순차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선정 프로그램의 주요 방향 및 내용을 아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Q. 저희 미술관에 상근하고 있는 인력이 유아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많아 주강사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이 상근인력의 인건비(주강사비)를 사업예산에서 책정 및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A. 문화시설 내 상근인력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다 해도 인건비 책정 및 지급이 불가합니다.

4. 지원신청서 관련

- Q. 작년과 다르게 교안을 적는 서식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안을 6페이지 2번 프로그램 세부내용 서식에 적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공모신청 서식 간소화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회차별 교안을 기술하는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지원신청서 내 모든 서식은 자율적으로 수정·추가·편집이 가능하며, 내용 또한 자율적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 Q. 작년과 다르게 예산계획을 적는 부분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산출근거가 아닌, 지출내용만 적으면 되는 것인지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 A. 공모신청 서식 간소화의 일환으로, 예산 세부산출근거 작성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예산 세부산출근거는 최종 선정 후 작성할 예정이며, 지원신청서 상에는 총 강사비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업체용역비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등 지출이 필요한 내용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통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